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961호 2024. 4. 24.(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4-55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병곡~동엽령 주차장)	2
거창군 고시 제2024-5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24-60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4-650호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5
거창군 공고 제2024-657호	근로자의 날 청소년 수련시설 임시휴관 실시	7
거창군 공고 제2024-663호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기간제근로자 채용 6차 공고	8
거창군 공고 제2024-664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사업 공사완료공고	21
거창군 공고 제2024-679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2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4-55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거창군수

1.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5	주차장	북상면 병곡리 739-1번지 일원	-	증)4,985	4,985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4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북상면 병곡리 739-1번지 일원 · 면적 : 4,985㎡	· 병곡~동업령 탐방객의 주차 편의 제공과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을 신설함

2. 관계 도면 : 실음생략

3.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지방세법 제112조 및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거창군수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읍면동	면적(m ²)	적용대상지역
합 계	32,210,186	거창읍·웅양면·마리면·남상면·가조면 일부지역
거창읍	26,767,975	상림리·중앙리·대동리·대평리·김천리·송정리·장팔리·정장리·동변리·서변리·가지리·양평리·학리 일부지역
웅양면	2,773,000	죽림리·동호리·산포리·노현리 일부지역
마리면	455,000	하고리 일부지역
남상면	1,320,476	대산리·월평리 일부지역
가조면	893,735	대초리·일부리·마상리·수월리 일부지역

○ 추가 고시지역

고시지역	증가면적	증가사유
남상면	303,722m ²	· 용도지역변경 :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일반공업지역)

○ 문의처 :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24.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19 등 2개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하여 보상계획 열람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물건조서 내용을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4. 19.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거창읍 김천리 일원
- 다. 사업량 : 89,707㎡(L=4.1k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4년 4월 19일(금) ~ 2024년 05월 03일(금)[09:00~18:00]
(공고일로부터 14일)
- 나.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
- 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서면으로 제출
- 라.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면적 등 상이 여부 확인) 등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보상대상 토지 등의 내용

- 가.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4. 보상시기 : 2024년 07월 예정(단,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나.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 감정평가법인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6.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미분할 필지는 추후 현황측량 후에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시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라.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거창군 건설교통과 하천담당(☎ 055-940-3642) 및 보상사무실(☎ 055-288-7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1부.
2.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1부.
3. 이의 신청서 1부. 끝.

거창군 청소년 수련시설 임시휴관 공고

근로자의 날(2024. 5. 1.) 등에 따라 거창군 청소년 수련시설(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시휴관 함을 공고합니다.

2024. 4. 19.

거 창 군 수

1. 휴관일자 : 2024. 5. 1.(수)
2. 휴관시설
 - 가. 거창군 청소년수련관(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 나.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4길 60)
3. 휴관사유
 - 가. 근로자의 날에 따른 시설 근무자 휴무로 운영인력 부재
4. 문 의 처
 - 가. 청소년수련관 : ☎055-940-8700(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 나. 청소년문화의집 : ☎055-940-8830(청소년문화의집)
5. 안내방법
 - 가. 거창군 홈페이지 새소식 및 공고란 게재
 - 나.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게시
 - 다. 시설별 휴관 안내문 부착 등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5차 공고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청소년동반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거 창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인구교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1명	·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 관내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업무 · 기타 청소년 상담 및 지원업무

2. 응시자격 요건

가.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채용분야	자격요건
청소년 동반자	· 채용 확정 시 거창군 내 거주가 가능한 자 *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이므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건임
	· 관련 자격증 * 1개 이상 소지한 자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 1년 이상인 자

1) 관련자격증 및 실무경력

관련 자격증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p>▶ 1개 이상 소지자</p>	<p>▶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p>

나.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라.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기타 채용조건

- 1)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전일제 직업 소지자는 신청 불가
- 2)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불인정

바. 가점 대상자

- 1) 법정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2)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사. 근거법령 및 기준

- 1)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3)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4)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등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나. 보 수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청소년동반자 보수)에 의함

※ 연 33,300천원 내외(기본급, 사례진행비, 자격수당, 연차수당 등)

다. 근로기간 : 2024. 5. 7. ~ 2024. 12. 31.(8개월)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전일제)

※ 운영 상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음

마.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바. 근무내용 :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업무 등

- 1)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활동매뉴얼’ 을 사전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 > 전자도서관 > 정보검색 > 본원간행물(PDF) 검색메뉴에서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 (개정3판)” 의 내용 확인 가능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심사

- 1) 자격증 소지여부 및 경력, 병역관련, 응시연령 등 응시 적격 여부
- 2) 자격 적격자 전원 합격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①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2) 면접위원 3명 예정

5. 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 모집공고 : 2024. 4. 19.(금) ~ 4. 26.(금) / 8일간
- 2) 원서접수 : 2024. 4. 22.(월) ~ 4. 26.(금) / 5일간

가) 접수장소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담당(평일 근무시간 내)
※ 점심시간 12:00 ~ 13:00

나) 접수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1차(서류심사) 발표 : 2024. 3. 29.(월) / 개별통보

-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다. 2차(면접시험) : 2024. 5. 2.(목)

- 심사내용 : 복무 및 근무자세, 직부분야 전문지식 등 점검

※ 면접 응시자 준비사항 : 신분증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3.(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1) 근무개시(예정)일 : 2024. 5. 7.(화)

2)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서식1) 1부
- 나. 자기소개서(서식2) 1부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1부
- 라.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마.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바. 자격검증 동의서(서식4) 1부
-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 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5) 1부
- 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라.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마.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바. 채용서류의 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1)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9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팩스(☎055-940-8709)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합격자 제외),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단, 등기우편으로 반환을 청구할 경우 비용은 구직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합니다.

사. 채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055-940-8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뒷면)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① 응시분야 :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 ② 전 화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 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 ④ 자격·면허 : 운전면허는 기재하지 않음
- ⑤ 주요경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 ⑥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서식2]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2024.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경력, 특히 거창군 청소년동반자로서의 포부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심사(서류전형·면접시험)에 필요한 인적사항, 자격·경력확인 조회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최종학력,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주요경력 등
- 자격, 경력, 최종학력 이외의 학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관련 문서 보존 기한 완료시 폐기처분함

라. 동의의 거부

응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항목 거부 시 응시에 제한이 있으며, 선택항목 중 자격·경력의 동의 거부 시 가점 미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제공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사항 등]

2024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청소년상담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거창군 아동보호전담요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4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거창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거창군 공고 제2024-664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22-133호(2022. 12. 15.)로 실시계획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거창군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50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
 - 명 칭 :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사업
3. 사업의 내용 및 면적
 - 사업의 내용 : 119안전센터 증축(차량창고 및 대기실 등)
 - 사업의 규모 : 1,618㎡
 - 건축면적 : 339.71㎡(증 77.76㎡)
 - 연 면 적 : 757.06㎡(증 191.4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아대로 300
 - 성 명 : 경상남도지사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거창군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 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우선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생업을 지원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정의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나.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2조제4호·제7조의3제3항)

1) 정부조직개편 사항 반영: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 장관

2) 인용 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

다. 생업지원 신설(안 제9조)

4. 예고기간 : 2024. 4. 24.(수) ~ 5. 14.(화)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14일까
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복지정책과)

다. 전화 055-940-3092, 팩스 055-940-3089, 이메일 salguc@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7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생업지원) 군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p> <p>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p> <p>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u>국가보훈처장</u>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p> <p>5.~6.(생략)</p> <p>제7조의3(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p> <p>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p> <p>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u>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u></p> <p>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p> <p>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u>국가보훈부장관</u>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p> <p>5.~6.(현행과 같음)</p> <p>제7조의3(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p> <p>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p>

현 행	개 정 안
<p>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p> <p>③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비용 신청 및 중단·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2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p> <p><u><삭 제></u></p> <p>제9조(생업지원) 군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p>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5. 22.>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9.25.)
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1.09. 2016.12.28) 호삭제(제7조~제9호 2018.12.26.)

- 제7조의3(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 ③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비용 신청 및 중단·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2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조신 설 2021.9.29.)